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3.20 (금) 10:30

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심홍섭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국제민간기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규정(안 제3조)
- 나. 사업수행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명기(안 제4조)
- 다. 사업 완료 또는 추진기간 만료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해야 할 정산보고서 명기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'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, 충청북도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과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